

- 문 : 수시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?
- 답 : 예, 할 수 있고, 재정패널티를 계속 주기 때문에 목표대로 안하면 우리가 줘야할 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.
- 문 : 주민들의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부분은?
- 답 : 요금은 고성군이 다 결정하므로 염려 안해도 됩니다.
- 문 : 고성군 지방상수도 업무 위탁 시 현재, 고성군의 긴급보수원, 무기 계약근로자 신분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수자원 공사와 계약시 신청자가 원하면 청원경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, 이는 계약서 문구상 반드시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답 : 만약 신청을 해서 하게 된다면, 신분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

8. 토 론 : 없음

9. 심사결과 :

-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

고성군계획시설 「하수도 : 고성하수처리장」  
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
(의안번호 제118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18.           고 성 군 수

2. 입안사유

고성군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하수량 증가분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 설치공간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 및 처리수 수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장래 안정적인 시설공간 확보하고, 기존 배치계획상 악취 유발시설과 인접해 있는 생태학습관 설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청취내용

○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내용

- 사 업 명 : 고성군계획시설(하수도:고성하수처리장) 결정(변경)
- 사 업 위 치 :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-1번지 일원
- 사 업 면 적 : 54,724m<sup>2</sup>→60,550m<sup>2</sup>
- 용 도 지 역 : 생산녹지지역(변경없음)

4. 청취경위

- 2009.10.21 :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주민열람 공고(고성군공고 제2009-812호)
- 2009.11.    : 관련실과 협의
- 2009.12.   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하수처리장은 '93. 11. 25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-1번지 일원에 면적 12,100m<sup>2</sup>로 고성군계획시설 「하수도 : 고성하수처리장」로 결정된 이후, 2차('99. 11, 15일, '09. 1. 8일)에 걸쳐 변경 결정되어 면적은 54,724m<sup>2</sup>로 증가되었으며

-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내 생태학습장 등 주민친화시설 및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면적을 기존 54,724㎡에서 5,826㎡를 확장하여 시설부지 총 면적을 60,500㎡로 변경하려는 것으로
- 그동안 주민공람 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설의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, 제출일 현재 경남도와의 농지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고성읍 송학리 97-4번지, 97-3번지 고성군에서 다 매입했는지?
- 답 : 매입했는데 133-1, 334-1번지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보류중입니다.
- 문 : 그러면, 양도소득세 해결 안되면 진행이 안된다는 것인지?
- 답 : 산정하는 기간이 조금만 경과하면 가능하고 내년이면 해결됩니다.
- 문 : 고성읍 5개동 모두 100% 하수처리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인지?
- 답 : 정동, 기월리 등 읍 외각을 제외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.
- 문 : 고성읍 인구 배로 늘어났을 경우 대비가 된 것인지?
- 답 : 현재,처리용량이 1일 1만 3천톤으로 인구 3만명까지 가능한데, 계속 도시화 진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